

인천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60744(본소), 2020나60751(반소) 판결

[간판대금등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1. B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2. C

피고, 피항소인 3. D

4. E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25.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소49584(본소), 2020가소 18739(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7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1. 6. 2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C에게 8,24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가족관계로 인천 부평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1) 사이에 2014. 11. 10. 약정개시일을 2014. 11. 15.으로 하여 10년(120개월)간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간판대금 3,08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원하는 내용의 현금지원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4. 20. 약정개시일을 2016. 4. 20.로 하여 같은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2,400,000원 상당의 냉장고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기자재 대여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 계약’이라 하고, 위 각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계약 제5조 제1항에서 피고들이 그 약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타 동종업체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에게 타 동종업체 변경일로부터 1일 이내에 간판대금 지원금의 150%를 입금하고 그 다음날부터 연 3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2 계약 제6조 제3항, 제5항에서 피고들이 약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타 업체나 동종업체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판매할 경우 그 기자재의 대여 당시 구입대금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입금하고 그 구매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각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간판대금을 지급하고 냉장고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왔다.

마. 피고들은 2019. 4. 17.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주류 가격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4. 25.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일방 파기에 대한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으므로 위약금으로 총 8,220,000원을 2019. 4. 30.까지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그 약정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피고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파기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간판대금 관련 위약금으로 4,620,000원(= 간판대금 3,080,000원 × 150%), 기자재 대여 관련 위약금으로 3,600,000원(= 기자재 구입대금 2,400,000원 × 1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다만,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원고의 주류 독점공급 기간은 총 10년으로 간판대금 지원 및 기자재 무상 대여의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장기간인 점, ② 원고가 실제로 피고들과 독점공급 거래를 한 기간이 그 절반에 가까운 4년 5개월에 이르는바, 원고로서도 그 기간 동안 취득한 영업이익을 통해 간판대금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을 상당 부분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간판대금, 기자재 구입대금의 150%에 이르는 돈을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정성을 잃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거래중단의 사유 및 이후의 경과, 통상적인 주류거래에 있어서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약금을 위 각 금액의 60%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간판대금 관련 위약금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른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연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이 역시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연 18%(= 약정 연체이율 연 30% × 60%)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타 거래처와 비교하여 피고들에게 고액의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은 10년의 기간 동안 피고들이 원고로부터만 주류를 공급받도록 하여 피고들의 거래 선택의 자유를 침탈하였는바,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점이나 원고의 채무불이행 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들이 10년간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대신 간판대금을 현금으로 지원받고 기자재를 무상으로 대여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그 계약 내용 자체가 피고들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비록 그 약정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이 거래처를 선택하거나 계약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계약의 문언상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년마다 주류 공급가격을 인하여 주거나 주변 식당과 동일한 가격으로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간판대금 관련 위약금 2,772,000원(= 4,620,00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감액된 약정 연체이율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기자재 대여 관련 위약금 2,160,000원(= 기자재 구입대금 3,600,00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한 다음날인 2019. 3.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일자에 거래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25.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2019. 4. 30.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9. 5.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이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이대로, 판사 이해선

1) 현금지원 약정서에 계약당사자는 피고 B로, 피고 C, D은 실운영자이자 보증인으로, 기자재 대여 약정서에 계약당사자는 피고 E로, 피고 D은 실운영자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들인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피고 B, E은 피고 D의 부모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